

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추진배경

비전과 추진전략

부문별 정책과제

향후 추진 일정

0 1 0 1 0 1 0 1 1 1 0 1 0 1 1 1 0 1 1 0 0 0 1 0 1 1 1 0 1 1 1 0 0 0 1 0 1 0 1 1 1 0 0 0 1 0 0 1 0 0 1 0 0 1 1 0 1 0 1 0 1 0 0 1 0 0 1

101010101010101010101011101011101100010101110101



I

추진배경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[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[06. 9.19/10.17]

-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, 복지·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
[06.11.2, 제3기 균형위 출범시]

-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
[06.11.29, 누리사업성과보고회]

3. 추진경위

06. 9

• 균형위, 2단계 대책 마련 착수

- 균형위 주최 전문가 회의 수차례 개최 (06.10~11)
- 정책실장 주재 전문가 회의 (국토연구원장, 산업연구원장 등, 06.11.30)
- 과제별 부처 실무협의 진행 (06.11~12)
- 정책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(06.12. 8)

06. 12. 22

• 2단계 구상 시안 대통령 보고

07. 1월

• 주요기업 대상 의견 수렴

07. 1월

• 쟁점과제 대상 균형위-관계부처 협의 진행

07. 1. 25

• 정책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

07. 1. 26

• 대통령 주재 주요부처 장관회의 개최

07. 2. 7

•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[안동]



Ⅱ

비전과 추진전략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

2단계
[민간부문]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

기업하기 좋은
투자환경 조성



살기 좋은
생활여건 조성

1단계
[공공부문]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지역혁신체계[RIS]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
3. 추진과제 : 2대 부문 14개 과제

정책
부문



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-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- 2 인력난 해소
- 3 산업용지 공급 확대
- 4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-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-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
- 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정책
과제

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- 1 고품질 주택 공급
- 2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-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-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-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-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-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Ⅲ

부문별 정책과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 · 이전 ·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· 인력 · 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 · 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[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]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② 인력난 해소

•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급

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•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•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-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
-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등



⑦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- **기업경영 및 종업원 생활여건 개선 등 포괄적 지원대책 마련**
 - 기업경영 애로사항 : 용지확보, 공장설립, 종업원 교육 등
 - 종업원 생활여건 : 주택 · 교육 · 보육 등
- **종합패키지 지원시스템 구축**
 - 관계부처 · 지자체 ·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 · 운영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정책방향

-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
-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①

고품질 주택 공급

-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
 -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 -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(현행 2년) 대폭 연장
-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 - 지방이전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- 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 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01010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②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
● 지방의 초중학교를 '지역복지 거점학교'로 운영

- 특기·적성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·복지·학습 거점으로 활용



● 지방 명문고교 육성

-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고 육성(136개교)
-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
 - 학생선발,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교원인사 등 자율권 부여

●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

- 프로그램 전문화 : 예체능, 과학, 논술 등 교사 아웃소싱 비율(3.3%) 확대
- 지방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(13%) 대폭 제고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

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-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-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
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
- 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

-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
- [예] 인사교류 · 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(MOU)체결
- 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 · 운영 등



010101011101011101000101011101011101011101000101011101

1010101010101010101011101011101011101000101011101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

-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



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 · 문화 · 복지 인프라 확충

- 혁신 · 기업 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
- 문화 · 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시설 확충 지원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- **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**
-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수준으로 확대
※ '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: 36.2%

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- **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**
 - 재정력 지수,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 확대
- **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**
 -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을 대폭 확대
 -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



IV. 향후 추진일정



- 2단계 구상 발표



- 2단계 세부추진계획 마련 · 확정



